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훈장 및 포장의 분실·파손 시 1회 무상 재교부>
■ 이성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54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 훈장 및 포장의 종류와 등급별 명칭	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성권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07. 25.
3. 회 부 일 : 2025. 07.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때 유상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2024년 훈·포장 재발급 신청자는 606명이고 매년 평균 550명 정도가 재교부 신청하여 1억 내외의 비용이 소요됨.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훈의 취지를 고려하면 1회에 한해서 예외의 차원에서 훈·포장을 무상으로 재교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훈장 또는 포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였을 때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훈장 또는 포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6조(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6조(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 ① ----- ----- ----- ----- ----- 다만,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수여되는 명예로운 표상으로,¹⁾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져 수훈자 본인만 패용할 수 있으며, 수훈자가 아닌 자가 이를 패용하거나 훈·포장을 매매 또는 양도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됨.²⁾

1) 「상훈법」 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2) 「상훈법」 제34조(패용) ① 훈장 및 포장은 본인만 패용하며, 사후(死後)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이를 패용하지 못한다.

제39조(벌칙) 훈장 또는 포장을 받지 아니한 사람(유족을 포함한다)이 훈장 또는 포장을 패용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훈장증 및 포장증은 ‘유일한 원본 증서’로서 단 1회만 발급되며, 재발급이 엄격히 제한됨.³⁾

반면, 실물 훈장 및 포장은 소장, 기념, 공식행사 등 실질적인 필요성을 고려하여 분실·파손 시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⁴⁾ 이를 통해 수익자 부담 원칙, 상훈의 권위 유지, 남용 방지 등 제도의 목적을 균형적으로 실현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520건의 훈·포장 재교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⁵⁾ 신청인들은 연간 1억원 내외의 재교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훈·포장 재교부 비용(신청인 부담)>

구분	등급	평균금액
훈장	1	약 427,000원
	2	약 336,000원
	3	약 163,000원
	4	약 146,000원
	5	약 145,000원
포장	-	약 145,000원

※ 자료: 행정안전부

제40조(벌칙)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상훈법 시행령」 제31조(훈장 또는 포장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④ 훈장증 또는 포장증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본인, 유족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상훈법」 제36조(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② 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최근 3년간 훈·포장 재교부 현황: '22년 480건, '23년 479건, '24년 606건

<최근 3년간(2022~2024년) 훈·포장 수여 현황>

(단위 : 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훈·포장	28,211	27,817	28,689

※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훈·포장을 수여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그 제작비용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 예우의 관점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⁶⁾

이에, 개정안은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훈·포장을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가 경제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수훈자의 공적과 명예를 존중하고 예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무상 재교부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의적인 분실·파손 또는 허위신고로 인한 도덕적 해이, 훈·포장의 중복 보유, 불법 매매 및 양도 등 악용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훈·포장의 불법 매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⁷⁾ 수년간 적발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어⁸⁾ 상훈 제도의 명예와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6) 조선일보 “훈장 잃어버리면 다시 돈내고 사라는 나라” (2011.11.1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15/2011111500022.html

7) 서울경제 “훈·포장 불법 매매 어떻게래…행안부 칼 뺀다” (2024.06.23.)

<https://www.sedaily.com/NewsView/2DAKRV2ZX9>

또한, 현재 약 96만 점에 이르는 서훈 수여 현황을 감안하면 무상 재교부 확대가 장기적으로 행정·재정적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훈·포장을 무상 재교부할 경우, 고의로 분실·파손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우려가 높으며, 재교부 신청 규모의 확대에 예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8

8) 훈·포장 불법 매매 게시물 현황: 2022년 58건, 2023년 36건, 2024년 19건, 2025년(상반기) 2건

참고

훈장 및 포장의 종류와 등급별 명칭

훈장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포장
 무궁화대훈장	등급없음 수여대상 : 대통령·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건국포장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국민포장
	수여대상 :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 유공자					
 무공훈장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포장
	수여대상 : 전시(비상사태), 전투참여 유공자					
 근정훈장	청조	황조	홍조	녹조	옥조	근정포장
	수여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직무 정려자					
 보국훈장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보국· 예비군포장
	수여대상 :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수교훈장	광화대장·광화장	흥인장	승례장	창의장	숙정장	수교포장
	수여대상 : 국권 신장, 우방과의 친선 유공자					
 산업훈장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산업포장
	수여대상 : 국가산업발전 유공자					
 새마을훈장	자립장	자조장	협동장	근면장	노력장	새마을포장
	수여대상 : 새마을운동 유공자					
 문화훈장	금관	은관	보관	옥관	화관	문화포장
	수여대상 :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체육훈장	청룡장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	체육포장
	수여대상 : 체육발전 유공자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혁신장	웅비장	도약장	진보장	과학기술 포장
	수여대상 : 과학기술발전 유공자					

개인표창 수장



대통령표창 수장



국무총리표창 수장

단체표창 수치



대통령표창 수치



국무총리표창 수치